

2022 대구·경북지역 온라인 정책 설명회

- 벤처기업확인제도 -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개요 ▶ 제도 목적 및 확인 절차

- ✓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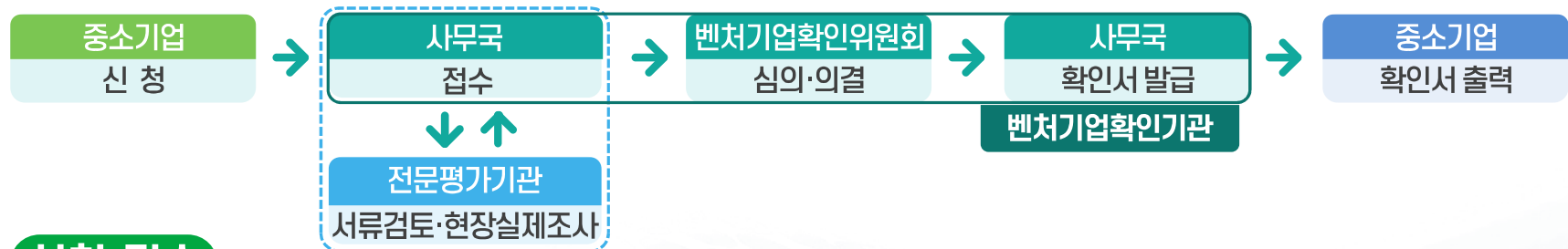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확인 대상

- 1 중소기업일 것
-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확인 절차



신청·접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접속 후 신청 (벤처기업확인기관 ☎ 02-1566-6487)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위원회 운영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50인 위촉

위원선정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장 포함
50인의 위원 위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

위원구성



산업계,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평가 기관 ▶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 기술평가 실적, 중소기업 지원 조직 및 지원실적 등을 갖춘 10개 전문평가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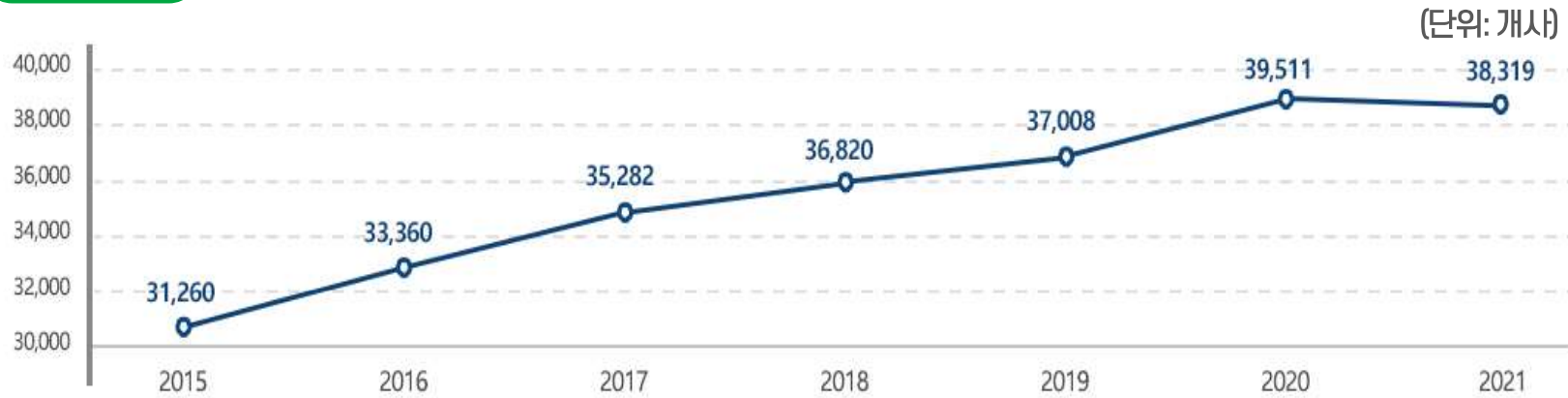
-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신청기업의 기술혁신성 및 사업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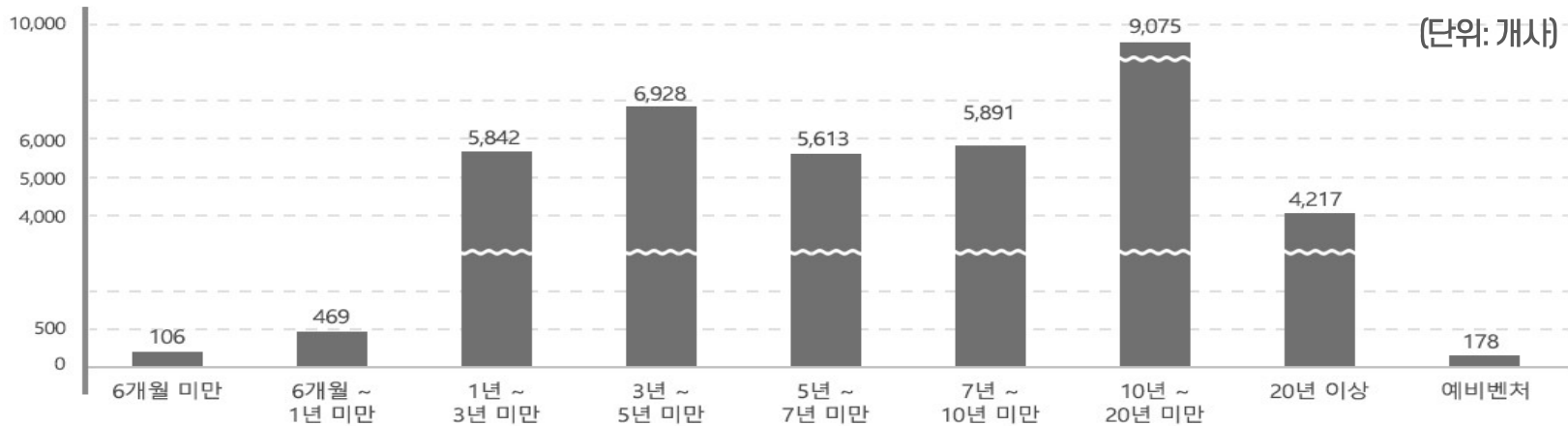
2. 벤처기업 주요통계

벤처기업 통계 ▶ 벤처확인기업 주요 통계 ① (21.12월 말 기준)

연도별



업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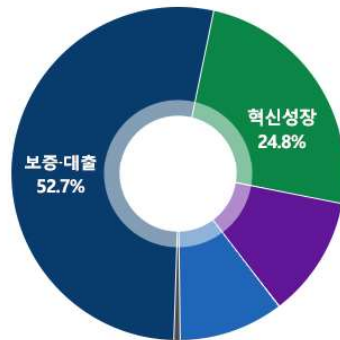
2. 벤처기업 주요통계

벤처기업 통계 ▶ 벤처확인기업 주요 통계 ② (21.12월 말 기준)

✓ 제조업이 62.1%로 대부분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62.2%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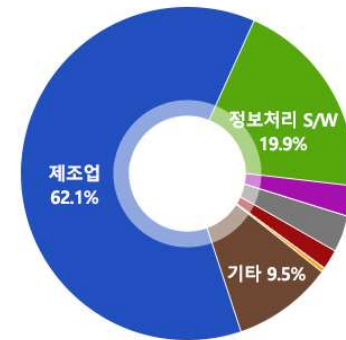
유형별

보증대출	20,180개 업체 (52.7%)
혁신성장	9,485개 업체 (24.8%)
연구개발	4,022개 업체 (11.6%)
벤처투자	4,022개 업체 (10.5%)
예비벤처	178개 업체 (0.5%)



업종별

제조업	23,804개 업체 (62.1%)
정보처리 S/W	7,628개 업체 (19.9%)
연구개발 서비스	1,160개 업체 (3.0%)
도소매업	1,129개 업체 (2.9%)
건설·운수	813개 업체 (2.1%)
농·아·임·광업	141개 업체 (0.4%)
기타	3,644개 업체 (9.5%)



지역별



3. 제도 개편 주요내용

제도 개편 ▶ 개편 목적 및 주요 경과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성 및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개편 배경

-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7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20) 39,511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5%)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주요 경과

- (법령 정비) 벤처기업법 개정('20.2), 시행령 개정('20.5), 시행('21.2.12)
- (제도 준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20.6), 전문평가기관 지정*('20.12), 벤처확인위 구성('21.1), 사무공간 개소('21.1),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오픈**('21.2.12)

* 벤처캐피탈협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발명진흥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www.smes.go.kr/venturein (1단계 : ~'21.2.12, 2단계 : ~'21.5.31)

- (제도 운영) 총 13,923개사 심의 및 확인('21.2.12~12.01)

3. 제도 개편 주요내용

1 제도개편 주요내용 (확인주체, 절차, 유효기간)

기존

- ① **확인주체**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VC협회)
- ② **확인절차** :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
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 ③ **유효기간** : 2년



변경

- ① **확인주체**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민간 전문가 중심)
- ② **확인절차** :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서 발급
- ③ **유효기간** : 3년

2 확인요건 개편 (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기존

- ① **벤처투자유형** : 투자금 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 이상
- ②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5천만원, 매출액의 5~10%,
사업성 평가 우수
- ③ **보증대출유형** : 보증/대출금 8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5% 이상,
기술성 평가 우수



변경

- ① **벤처투자유형** : 요건 동일,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
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② **연구개발유형** : 요건 동일,
연구소 유형 추가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평가지표 재설정 (사업성 평가 우수)
- ③ **혁신성장유형** : 유형 신설,
평가지표 재설정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3. 제도 개편 주요내용

3 유형별 평가지표 개편







✔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중심 개편

- 업종(제조업/서비스업)과 업력(3년 이상/3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적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평가내용)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혁신성	혁신기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전담연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혁신활동	신기술(제품) 여부	신서비스(기술) 여부
		핵심 기술 성숙도(TRL) 진단	핵심 서비스 개발 과정(NSD) 진단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서비스 발전 노력과 의지
		기술 경쟁력 평가	서비스(기술) 경쟁력 평가
혁신성과	외부기관과의 협력 실적		
사업성장성	성장기반	기업가 정신	
		경영주 기술지식과 경험	
	성장활동	핵심사업 경영준비단계(BRL) 진단	
		사업성장 노력	
	성장성과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고용 증감률	
지속가능경영(성과공유, 가족친화, 친환경 등)			

4.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 벤처기업 우대사항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개별 제도상 우대

분류	내용	법적근거
 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조특법 & 6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 58의3②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상장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6①
 입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 58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 58②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 3의2②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 16의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 16의3①
 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이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하구방송과규지회고 나에너 가체 그전에 따라 별도 선정 	kobaco 규정

5. 유형별 요건 및 제출서류

1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일정 및 절차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자동연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vat 별도)

5. 유형별 요건 및 제출서류

2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일정 및 절차



제출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조직/부서 인정서, 연구개발비 산정내역서 등
 - * 선택서류 및 세부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50,000원	100,000원	350,000원

(vat 별도)

5. 유형별 요건 및 제출서류

3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일정 및 절차



제출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선택서류 및 세부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550,000원	100,000원	450,000원
400,000원	100,000원	30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300,000원	100,000원	20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시)

(vat 별도)

5. 유형별 요건 및 제출서류

4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일정 및 절차



제출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선택)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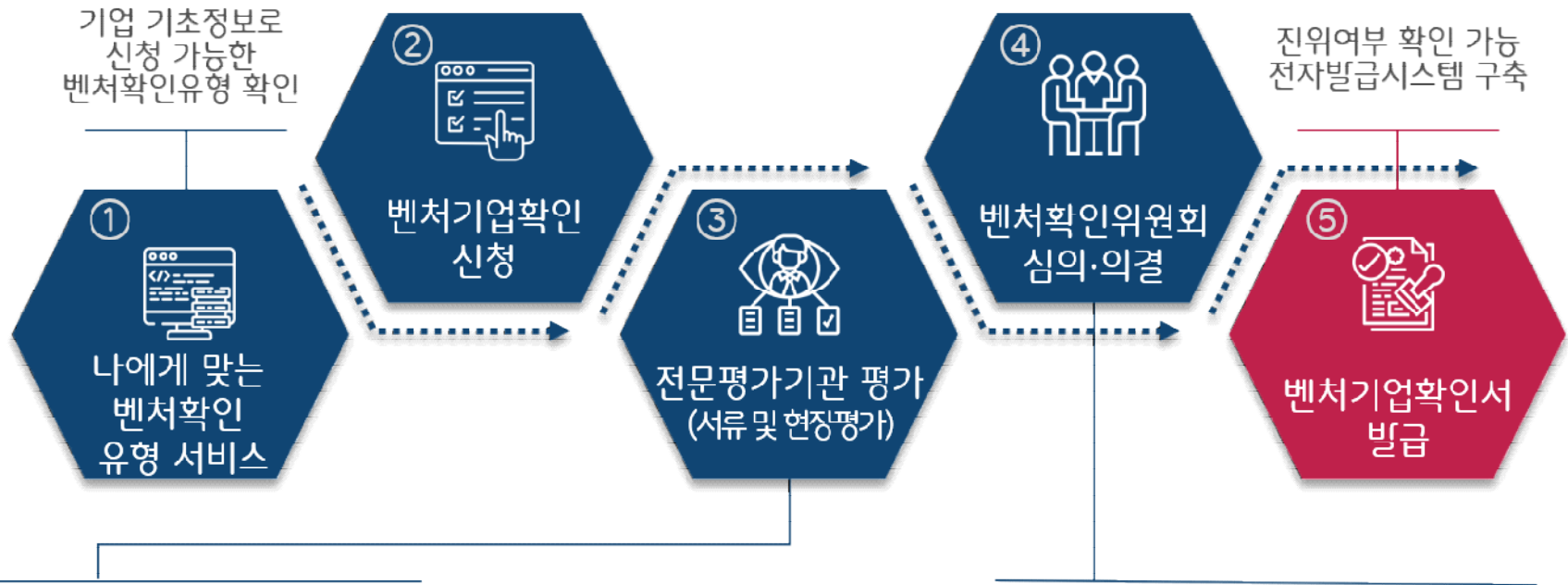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50,000원	100,000원	350,000원

※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시 200,000원

(vat 별도)

6. 벤처기업확인 절차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통합되어 신청, 평가, 심의/의결까지 단일 창구로 진행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수행

-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서류검토)
-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장평가)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

- (사전검토)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집중검토 안건 상정 등 본 위원회에 필요한 사전검토 내용 정리
- (본 심의) 사전검토를 통해 상정된 벤처기업 확인 안건에 대해 최종심의 의결을 진행 (7인 이상)

감사합니다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

고객센터 1566-6487

카카오톡 ID



홈페이지

www.smes.go.kr/venturein